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호 외 2015. 3. 26(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진안군 조례 제2097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및운영조)1

규 칙

○ 진안군 규칙 제1130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8

회 말										
--------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이 광 

2015년 3월 26일

진안군 조례 제2097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안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명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역도(力道)로 하고, 명칭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선수단은 단장, 감독 및 단원으로 한다.

1. 단장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부군수로 하며, 감독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2. 단원의 수는 지도자 1명, 선수 4명 이내로 한다.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발령한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진안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진안군체육회 임원 중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휘한다.

제7조(임용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자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② 지도자는 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진안군에 두어야 한다.

제8조(퇴직 및 면직)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쇠약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③ 단원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은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수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호봉 상한선을 지도자는 6급 30호봉, 선수는 7급 30호봉, 8급 25호봉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원의 봉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근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모든 단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3. 지도자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3조(훈련비 등)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② 단원이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5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분 및 권익보장) 군수는 단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봉급 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근속 년수	지도자	선 수			비 고
		A 급	B 급	C 급	
1	6급5호봉	7급10호봉	7급5호봉	8급1호봉	초임적용
2	6급6호봉	7급11호봉	7급6호봉	8급2호봉	
3	6급7호봉	7급12호봉	7급7호봉	8급3호봉	
4	6급8호봉	7급13호봉	7급8호봉	8급4호봉	
5	6급9호봉	7급14호봉	7급9호봉	8급5호봉	
6	6급10호봉	7급15호봉	7급10호봉	8급6호봉	
7	6급11호봉	7급16호봉	7급11호봉	8급7호봉	
8	6급12호봉	7급17호봉	7급12호봉	8급8호봉	
9	6급13호봉	7급18호봉	7급13호봉	8급9호봉	
10	6급14호봉	7급19호봉	7급14호봉	8급10호봉	
		중	략		
20	6급24호봉	7급29호봉	7급24호봉	8급20호봉	
21	6급25호봉	7급30호봉	7급25호봉	8급21호봉	
22	6급26호봉		7급26호봉	8급22호봉	
23	6급27호봉		7급27호봉	8급23호봉	
24	6급28호봉		7급28호봉	8급24호봉	
25	6급29호봉		7급29호봉	8급25호봉	
26	6급30호봉		7급30호봉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비 고
올 림 픽	20,000	15,000	10,000	
국 제 대 회	10,000	5,000	3,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전 국 체 전	2,000	1,000	500	아시아권 국제대회 포함
전 국 대 회	500	300	100	

※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 포상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종목은 50%만 지급한다.

【별표 3】

훈련비 지급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식 비	간식비	목욕비	비 고
27,000	20,000	3,000	4,000	1인 기준

※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운 임	비 고
62,000	10,000	20,000	25,000	4,000	3,000	실 비	1인 기준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이 광 로 

2015년 3월 26일

진안군 규칙 제1130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8.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전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단원의 임용에 따른 등급 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입단 시기에 하되, 전년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③ 등급 조정 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취득한 선수에 대해서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훈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훈련 등)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때

제12조(신분 및 권익보장) 군수는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단원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이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

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 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 ① 단원이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 만 55세

2. 선 수 : 만 35세

② 단원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경기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호봉 조정 및 승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의 호봉조정 및 승급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호봉조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다만, 신규 입단하여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③ 승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⑤ 단원의 초임호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타 선수단 근무경력은 100분의 80을 합산(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

2. 군 의무 복무기간

제17조(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1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 ④ 견책은 6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 ⑤ 징계에 따라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등급 조정기준(제6조 관련)

1. 입상실적 점수 기준

구 분	금 (1위)	은 (2위)	동 (3위)	비 고
국 제 대 회	30점	20점	15점	·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을 말한다. · 아시아권의 국제대회는 전국체전과 동일하다.
전 국 체 전	20점	15점	10점	
전 국 대 회	10점	8점	5점	

2. 등급별 점수기준

구 분	점 수	비 고
A급	40점 이상	
B급	20점 이상 40점 미만	
C급	20점 미만	

- ※ 청소년, 유니버시아드, 1·2군 국가대표로 발탁 시 10점 가산
- ※ 대회출전이 5개 대회 미만인 경우 5점 가산
-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 ※ 선수등급 적용(A, B, C등급)
 -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 적용

【별표 2】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규정 위반의 도 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우 경	규정 위반의 도 가 중하고 고의 가 없는 우 경	규정 위반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우 경	규정 위반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없는 우 경
성실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품위유지의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복종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장이탈 금지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밀엄수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청렴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입 단 신 청 서(제2조 관련)

본인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 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고, 만일 입단후에 허위 사 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성 별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학교(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위	근 무 처
	부 터	까 지		
주 요 경기실적				

진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제3조 관련)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진안군수와 근로자인 는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간)
2. 근로직종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종목 :)
3. 단원의 직책 :
4. 보 수
가. 봉 급 : 일반직공무원 급 호봉 상당
나. 수 당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 수당
다. 지 급 일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5. 근로조건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적용
6.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대 표 자 : 진 안 군 수 (인)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제3조 관련)

본인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 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제4조 관련)

관리번호				사 진
주 소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최종출신 학교		졸업연월일	년	월 일
입단일자		계약구분	지도자, 선수	
신규입단시 등급 및 호봉		현재 등급 및 호봉		
경 력 사 항				
기 간	소속	출전횟수	입 상 내 역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제5조 관련)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 월일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직 위			직책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진 안 군 수</p>					

【별지 제6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제5조 관련)

인 적 사 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 급(위)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기간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용 도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7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제9조 관련)

				지도자	담당	감독	결 재
20 년 월 일(요일) 날씨:							
훈련시간	장 소	참가자	훈 련 내 용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단 원 증(제13조 관련)

(전면)

사 진	성 명
	(영 문)
	진 안 군

(후면)

No.	혈액형	형
단 원 증		
소 속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종 목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20	
진 안 군 수		
☎ 063)		

- 규격 : 가로 8.5cm, 세로 5.5cm

